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6

발의연월일: 2020. 7. 2.

발 의 자:김태호·김성원·윤영석

강기윤 · 김예지 · 서일준

윤두현 · 조수진 · 권명호

김형동 · 김석기 · 이양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·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. 국세·지방세의 비율도 8:2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임.

최근 3년간 도시·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·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%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%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,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·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1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8조의2(세액이전의 신청) ① 거주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것(이하 이 조에서 "세액이전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이전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, 신청에 따라 세액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이전이 완료된 거주자에 대하여 세액이전 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세액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세액이전의 방법, 신청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액이전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<신 설> 제48조의2(세액이전의 신청) ① 거주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 계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 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것(이하 이 조에서 "세액이전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이전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응해야 하며, 신청에 따라서액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 | 7 2 3 3 6 8 7 8 7 | 거주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 예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 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 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 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|
|--|---|---|
| 지를 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 액이전이 완료된 거주자에 대 하여 세액이전 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| | 선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 2) 제1항에 따라 세액이전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, 신청에 따라 네액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 지를 하여야 한다. 3) 제2항에 따라 세액이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이전이 완료된 거주자에 대하여 세액이전 금액 중 조례로 |

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
 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

 로 제공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세액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전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세액이전의 방법, 신청 시기

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

 통령령으로 정한다.